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삼익-영창약기의 합병을
불허한 것에 대해 KDI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7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공정위정책 정면비판』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4일자 4면)

내 용 :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
용행위규제와 기업결합심사 등과 같은 ‘경쟁정책’
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경쟁정책이 국내시장 조건 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다.

3일 KDI는 ‘해외 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
조에 대한 실증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경쟁정책을 위해 기업체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할 때
는 잠재적 해외경쟁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중략)

지난해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한 삼익약기와 영창
약기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KDI는 공정위가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의 중요성을 고려했지만 국내
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부문의 반응과 같은
동태적 측면도 함께 살펴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5년 3월 4일자 4면 『공정
위정책 정면비판』 제하의 기사에서 KDI가 삼익-영
창약기 합병 불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
습니다.

KDI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삼익-영창악기 합병 불허는 잘못"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KDI는 공정위가 "국내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데 있어 잠재적인 해외경쟁압력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함으로써 삼익-영창악기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규정 위반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재적 해외경쟁 압력의 중요성을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국내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부문의 반응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4일자 4면 『KDI "삼익-영창악기 합병불허는 잘못"』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불허한 것에 대해 KDI 보고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KDI 보고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바가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매일경제 4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5년 4월 1일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3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8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대화커녕 법정싸움 번져, 노동부 책임 회피 비난도』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3일자 8면)

내 용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대차 주요공장들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노동부가 불법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현대차의 시정계획에 타당성이 없어 현대차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적인 시비가 여기까지만 가려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략)

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미비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사업주를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몇천만원짜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뿐 가장 중요한 고용관계 시정은 사업주에게 우호적인 판결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

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 이런 고용의제 조항이 법원에 가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겨레 3월 3일자 8면에 게재된 『대화커녕 법정싸움 번져, 노동부 책임회피 비판도』 제하의 기사 중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동 기사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과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는 고용의제규정이 있으나, 동 조항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례추세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적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적법파견의 경우라도 이를 강제할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사업주를 행정지도하는데 근원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한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3월 3일자 8면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2년 이상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8면 이내에 2005. 4. 4. 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4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봉양을 소홀히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8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정 ○ ○ 외 4인

피신청인 : SBS-TV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5. 3. 2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5년 3월 6일 20:20)
 내용 : ▷ 앵커 : 중증 치매를 앓고있고, 생계까지 곤란한데도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못받는 노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복지국가는 먼 얘기입니다. 김○○ 기자의 '현장 속으로'입니다. (중략)

▷ 기자 : 할아버지는 6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 뒤 할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다 지난 2003년 이곳에 월룸 셋방을 얻었으며 둘째딸이 매달 보내주는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 : 복지관에 10만원 내고... 가스비, 전화세, 전기세 이것이 7,8만원 돈 10만원이나 나온단 말이야. 그거 주고 나면 내 약 값하고 하면 쓸 것이 없지 뭐. 쓸 것이. 돈이

▷ 기자 : 답답한 마음에 가끔씩 아들 집을 찾지만 사업에 실패한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 할아버지 : 며느리하고 셋이 중국 가서 있는데... 연락이 안돼, 나하고.

▷ 기자 : 아들을 단념한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할머니를 무료 요양시설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 할아버지 : 내가 앞에 간다면 첫째 나 치우는 것보다도 저 사람 어디다가 관리를 맡겨야 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한심스럽지 뭐... 한

심스럽고 걱정이지.

▷ 기자 : 그러나 현재 할머니를 무료요양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무료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SBS가 3월 6일 일요일 저녁 「8시뉴스」 프로그램 '버림받은 치매 노인들'이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중증 치매 부인과 함께 사는 정모 할아버지가 6년전 사업 실패로 본인의 전재산을 날린 아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월룸 셋방을 얻어 둘째딸이 매달 보내주는 30만원의 생활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할아버지 자녀들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자식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전세방에서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옆에서(같은 동) 부모님의 근황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치매부모봉양에 최선 다해"
- 내용 : 지난 3월 6일 「8시뉴스」 시간에 방송된 '버림받은 치매 노인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정모 할아버지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전세집을 마련해드리고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큰 아들이 인근에 살면서 부모님의 근황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아침뉴스' 2005년 4월 8일까지 프로그램에 아나운서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화면에는 동 보도문의 제목("치매부모봉양에 최선다해")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2005년 4월 4일 06: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사용을 승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경기중재1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류 영 하)

피신청인 : 기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기호일보 : 『평택해양청 수익사업 말썽』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7일자 1면)

내 용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임항지구내 공공용지 또는 녹지지역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뒤 특정

업체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부지로 승인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지자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항만개발 주체인 해양청은 현재 결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세관 등 항만지원 행정관서들이 수년전부터 청사마련을 위해 임항지구내 공공용지를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함에도 이를 외면해왔으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치 않고 사안에 따라 일방통행식 업무추진을 감행하는 등 수입에 급급한 편의주의적 행정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기호일보가 2005년 3월 7일자 신문에 『평택해양청 수익사업 말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컨테이너 등 수출입 화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부두내 이를 처리할 야적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부두배후부지를 수출입화물처리지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허가계획을 공고하여 경쟁을 통해 실수요자를 선정한 것으로, 이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부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또한 현재까지 큰 수요가 없는 항만 관련 기관의 청사부지는 장기적으로 내항에 계획하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기호일보가 2005년 3월 7일자 1면 『평택

해양청 수익사업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컨테이너 등 수출입 화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부두내 이를 처리할 야적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어서, 동 부두배후부지를 수출입화물처리지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허가계획을 공고하여 경쟁을 통해 실수요자를 선정한 바, 이는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부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현재까지 큰 수요가 없는 항만관련기관의 청사부지는 장기적으로 내항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호일보 2005년 4월 2일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항내 녹지 무단용도 변경... 특정업체 야적장등 허가)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세 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5년 3월 6일 23:00)

내 용 : ▷ 임성훈 : 안녕하세요. 지난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이후 허탈한 분들 참 많으실겁니다. 유례없는 불황속에서도 재산이 억단위로 늘어난 공직자가 많은데 그 중 상당수의 재테크 수단은 다름아닌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면 정부의 약속만 철석 같이 믿고 따랐던 서민들만 지금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중략)

▷ 성우 : 부동산 투기만큼은 잡고야 말겠다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색해지고 말았다.

▷ 성우 : 그런데 부동산으로 재산이 크게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이부총리뿐만 아니었다. 지난 17일 부동산 안정 정부대책을 발표했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

▷ 성우 : 그가 지난해 부동산으로 올린 이득은 무려 11억원! 부동산만 놓고 보면 재산증가 1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송파구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김차관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준 행운의 땅이다!

▷ 성우 : 김차관의 가족은 2001년 11월 부인명의로 송파구 장지동의 농지를 매입했다고 했다. 그런데 취득 3개월만에 이곳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예고 됐다. 이어서 지난해 1월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18억... 3년이 되지않아 11억원의 차액이 생긴 것이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는 한 적이 없으며 상속을 받은 토지라는 것!

▷ 성우 : 83년도에 사망한 장인이 친척의 명의로 사둔 땅을 매매형식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 경제정의실천연합 박병욱 사무총장 : 사전에 개발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구입해서 판매해서 매매수익을 얻은 것이아니냐는...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 : 근거자료가 없이 이렇게 본인의 발언만으로 해명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로서 옳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2005년 3월 6일 23:00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에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부인의 명의로 송파구 장지동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 장지동 농지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부인의 명의로 매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김세호 차관의 장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분배 받아 계속 보유해 오던 것을 김세호 차관의 부인이 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2005년 4월 10일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말미에 청색바탕에 흰색 자막으로 표시하고, 아나운서에게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생방송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프로그램 (2005년 4월 2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국해양연구원이 새만금 방조제 완공시 과거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변 상 경)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새만금 물막이 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21일자 1면)

내 용 : 정부 계획대로 내년 초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돼 1단계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과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정부용역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물막이 공사를 끝낸 4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을

트고, 현재 미완공 구간(2.7km)의 물막이 공사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순 예측이나 주장 차원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의 수년간에 걸친 과학적 연구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이어서 담수호 정책 철회 등 새만금 개발사업 내용의 전반적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3차년도)'에 따르면 한국해양연구원(원장 변상경)은 최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용역사업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조사기간은 2004년 2월~2005년 2월까지이며, 해양연구원을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학계 등 178명의 전문가가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단은 287쪽에 이르는 요약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해역 담수화시 저서생물 폐사에 의한 오염부하량 및 이에 따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증가분이 최소 25로 나타났다.”면서 “현재의 새만금 개발계획은 시화호 초기 오염의 주범이었던 생물폐사로 인한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해역수질등급상 COD가 4를 넘으면 ‘등급외’로 분류되며, 지난 1997년 시화호가 최악의 수질오염에 시달렸을 때도 18.3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단은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저수량 12억 7000만㎡)에 달하며, 이후 동진수역 개발시는 32(8억3000만㎡), 만경수역까지 개발(3억 5000만㎡)하면 COD 증가분이 9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현재 미완공된 2호 방조제의 개방구간(2.7km)을 그대로 유지하고 ▲4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추가 개방(800m)하는 등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책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후략)

(2) 『새만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21일자 26면)

새만금 개발사업이 1991년 착공 이래 최대 고비에 맞닥뜨렸다. 2002년부터 4년째 갯벌 생태계와 해수 오염, 수질오염 등을 현장에서 관찰해 온 한국해양연구원 등 새만금 조사단이 사실상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를 주문하며 강력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제2의 시화호 우려’ 주장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여러 과학적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점은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가 발주한 대형 용역사업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도 남다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오는 6월까지 정부가 내놓기로 한 새만금 개발종합계획 수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보도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1일자 1면에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과거 시화호 사업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물막이 공사를 끝낸 방조제 일부 구간을 트고 미완성 공사 구간도 중단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담수화가 진행될 경우 COD 증가분이 25ppm에서 90ppm까지 증가한다”, “새만금 조사단이 방조제 완공단계부터 문제를 삼았으며 새만금 담수호 정책철회를 주문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조사단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 및 해수유통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기에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새만금 물막이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양연구원의 입장
- 내 용 : 본지 3월 21일자 1면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 공사를 끝낸 방조제 일부 구간을 트고 미완성 공사 구간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조사단이 방조제 완공단계부터 문제를 삼았으며 새만금 담수호 정책철회를 주문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조사단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담수호 정책 철회 및 해수유통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주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6내지 7면에 2005. 4. 11.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새만금 물막이 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양연구원의 입장』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7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상안검이완증’ 치료 수술을 받으면서 이마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권 양 숙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월간조선 : 『권양숙 여사 성형수술설』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호 98~100면)

내 용 : (전략)

권양숙 여사는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 바깥쪽에 잔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라고 한다. 의료진의 설명이다.

<권여사는 속눈썹 아래까지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까지 가리게 됐다. 눈꺼풀을 올려 주는 근육이 약화됐다. 권여사는 이마의 피부가 늘어져서 눈꺼풀이 더욱 처져 보이는 경우였다. 그래서 「이마거상술」까지 같이 하게 됐다. 이마의 피부를 당겨 주는 수술이다. 그렇게 하면 미간과 콧날이 조정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얼굴의 균형이 잡히게 된다.>

-그런데 권여사가 코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찍은 사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많다. 이러면 코가 높은 사람도 낮아 보인다. 이번에 수술 후 공개된 사진은 화장도 완벽하고, 콧대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에서 찍어서 그렇다.

쌍꺼풀 수술 한 가지만 해도 얼굴 전체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려는 것이다』

-누가 권여사 수술을 했다.

『성형외과 교수 한 명이 가서 했다. 성형외과나 의대 본부를 통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그 의사에게 수술을 요청했다. 그래서 서울대 사람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서울대팀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권여사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 성형외과 쪽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성형한 후 한 달까지는 부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자리가 잡히지 않는다. 두달쯤 지나면 권여사께서 만족하실 걸로 생각한다. 서울의대 성형외과 의사 6명은 의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용 쪽에도 전문가들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5년 4월호에서, 『권양숙 여사 성형수술설』이라는 제목 및 『눈꺼풀 수술하면서, 이마 성형을 함께 실시했다.』라는 부제로, 권 여사가 최근 눈꺼풀이 늘어나 눈을 뜨기 힘든 증상인 ‘상안검이완증’ 치료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권 여사가 눈꺼풀 수술과 함께 이마의 피부를 당겨주는 성형수술인 ‘이마거상술’을 하였고, 권 여사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서울의대 성형외과 쪽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권 여사는 상안검이완증 치료수술 외에는 이마 등 다른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수술결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로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5년 5월호에 100쪽 이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목차 부분에 제목(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쪽수를 다른 목차 부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제목활자 크기(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는 중재대상 기사의 중간제목(확인취재)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권양숙 여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호 8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OECD가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정부규제가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OECD가 권고한 선진한국의 조건』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5일자 23면)

내 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한국이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를 시정하고,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정부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 사항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략)

이에 반해 OECD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부문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에 불과한 것은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에 기인한다면서 "서비스 가운데 전기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이 독립된 규제기관보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에 직접 원인이 있다면서 이는 과보호의 시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국정부의 기업정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도 지나칠 수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2005년 3월 5일자 23면 『OECD가 권고한 선진한국의 조건』 제하의 사실에서 "OECD가 3월 1일 발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동 OECD 보고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외국인 소유관련 규제를 제거하라고

권고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업소유구조의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보는 지난 3월 5일자 23면 『OECD가 권고한 선진한국의 조건』 사실 가운데 OECD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에서 '고용확대와 기업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업소유구조의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는 4호 활자크기로 하고, 2005년 4월 18일 이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6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능인불교선양원이 조계종의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단감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9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표자 이 정 섭) 외 2인
 피신청인 : 불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3. 31.
 처 리 결 과 : 합 의

보도내용

불교신문 : 『능인선원, 종단 감사 두차례 거부』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1일자 2면)

내 용 : 서울 강남의 대규모 사찰인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이 종단 감사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 서초구 포이동의 능인선원은 지난해 연말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에 이어 지난달 실시한 직할교구 감사 등 두 차례의 종단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며 능인선원의 종무감사 거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표방하며 신도를 모집하고 각종 신행활동과 교육 등을 진행해 온 능인선원의 감사거부에 대해 총무원은 “정확한 경위를 재차 확인한 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감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중헌종법에 근거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능인선원은 또 종단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능인선원이었던 서초동 건물이 재개발로 건물이 사라져 공찰등록요건이 해제된 것이다. 현재 건물인 포이동 능인선원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다. 총무원은 능인선원 측에 종단과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일자 2면에 『능인선원, 종단감사 두차례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포이동 능인선원은 지난해 연말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에 이어 지난달 실시한 직할교구 감사 등 두 차례의 종단 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와 “현재 건물인 포이동 능인선원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포이동 능인선원은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의 기본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나 직할교구 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지, 감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포이동 능인선원 건물은 종단에 등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종단에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일자 2면 『능인선원, 종단감사 두차례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능인선원의 조계종 총무원의 종무감사에 이어 직할교구 감사 등을 거부하고, 포이동 능인선원 건물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능인선원 지광스님은 능인선원이 개인 사찰과 달라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조계종 중헌에 의하더라도 조계종 감사를 받거나 재산을 등록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불교신문 2면 우측 하단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 부제

목(재산도 미등록...)의 활자 크기로 2005년 4월 19일
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불교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9
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여수시가 항의하자 해수부는 이미 제작된 12만부
외에 나머지 8만부의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
우고 있다는 것. (중략)

여수시청 일부 직원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뀌
면서 박람회 유치전략이 수정돼 ‘여수’ 대신 ‘남해
안’ 이라고 표기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3월 24일자 11면에 『여수박람회 홍보
‘삐걱’』 제하의 기사에서 박람회 홍보물(팸플릿)에
개최지인 ‘여수’ 대신 ‘남해안’으로 표기된 것에 대
해 여수시가 항의하자 해양수산부가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우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이 바뀌면서 박람회 유치전략이 수정되어 ‘여수’ 대
신 ‘남해안’ 이라고 표기된 것 같다는 내용의 보도
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박람회 홍보물(팸플릿)의
제작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실
제 제작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
부가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홍보물에 ‘여수’ 대신 ‘남해
안’으로 표기된 것은 현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이전
부터 이미 추진된 사항으로, 장관이 바뀌면서 박람
회 유치전략이 수정된 결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수시의 항의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책자의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0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오 거 돈)

피신청인 : 경향신문

증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여수박람회 홍보 ‘삐걱’』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24일자 11면)

내 용 : 작년말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홍보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수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오는 25일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막하는 세계(등록)박람회에서 회원국
을 상대로 펼칠 첫 유치 홍보전의 팸플릿에 개최지인
‘여수’ 대신 ‘남해안’으로 표기 됐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3월 24일자 11면 『여수박람회 홍보
‘삐걱’』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홍보물(팸플릿)의 제작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실제
제작하므로 해양수산부가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느

라 법석을 피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여수' 대신 '남해안'으로 표기된 것은 현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장관이 바뀌면서 박람회 유치전략이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지역면에 2005. 4. 18. 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5
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0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경제 :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제하의 기사
(2005년 3월 17일자 2면)

내 용 : “범죄 발생 전에 범인 수부터 확정(?)”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확정되기도 전에 적발 목표치부터 내놓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공정위는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 성과지표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 기업결합 차단금액, 시정조치할 신문지국 수 등을 수치로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할 기업 수는 141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건수는 금액으로 1,200억원, 경품 과다지급 등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신문지국 수는 240개이다. 한마디로 죄를 짓기도 전에 잡아넣을 범인 수부터 결정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실국에서 과거 통계를 추계한 후 올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를 들은 노 대통령은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잡아넣을 범인 수부터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17일자 2면에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 확정되기도 전에 적발 목표치부터 내놓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본지 기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지난 3월 17일자 2면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다소의 지적은 받았으나 ‘꾸지람’을 들은 사실은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면에 2005년 4월 26일까지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의 활자크기는 본 건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조사대상 등 확정도 전에…)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방부가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육군 후방군단 2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0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국방부 (장관 윤 광 응)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육군 후방군단 폐지 검토』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일자 12면)

내 용 : 군이 장성급 후속 인사를 앞두고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2개 육군 후방 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윤광응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합동 참모본부와 육군이 후방부대의 지휘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영남 지역을 담당하는 11군단과 충청·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9군단을 없애고 휘하 사단을 2군 아래에 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가 지난 4월 6일자 2면에 보도한 『육군 후방군단 폐지 검토』 제하의 기사 중에서 장성급 후속인사를 앞두고, “2개 육군 후방군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윤광응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도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지난 4월 6일자 2면 『육군 후방군단 폐지검토』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방부는 “육군 후방 군단 폐지 검토는 향후 군구조 개선 중장기추진 과제이기는 하나 장성급후속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

겨레 2005년 4월 23일까지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
되, 제목활자 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 기사의
소제목(9·11 군단…)크기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3일
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청구규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1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이 주 현)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1) 『SKT, 국책연예 20억 제공 ‘물의’』 제하
의 기사 (2005년 4월 6일자 15면)

내 용 : 정보통신정책연서 SK텔레텍 프로젝트수
행중 성금받아

정통부 적발... 수뢰연구원 사표수리 상급자 2명
중징계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생산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해 정부 규제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
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는 용역을 발주한 정
보통신부에 보고되기에 앞서, SK텔레콤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자
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당국
등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감
사원 또는 국무총리실이나 정보통신부를 통해 정밀
감사를 벌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자체조사 결과 KISDI는 정보통신부로부터
SK텔레텍의 120만대 생산물량 제한에 대한 규제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SK텔레콤으로부터 모두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SK텔레콤이 KISDI에 대해 이 돈 중 10억원을
‘성금’조로 지불했고, 나머지 10억원도 구체적 연구과
제 없이 포괄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KISDI는 프로젝트 보고서 초안에서 SK텔레
콤이 자회사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생산을 확대
하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경쟁제한 요인
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KISDI가 지난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예산에 쪼들리자 이례적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인다”며 “오비이락인지 여부에 대
해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KISDI의 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
한 집행은 없었는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 보고서의 유출과 관련, 정통부는 지
난달 10일 KISDI출신 SK텔레콤의 상무급 인사가
KISDI의 인트라넷에 있는 자료를 후배 연구원을 통
해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KISDI는 이 연구원

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상급자 2명에 대해 징계했다.

(2) 『“SK텔레텍 규제 계속돼야”』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2일자 14면)

(전략)

앞서 KISDI는 지난달 중순 유출된 이 연구의 중간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의 필수정보를 SK텔레텍에만 제공해 발생하는 시장선점효과와 부작용만을 지적하는 등 지난해 말 SK텔레콤으로부터 ‘성금’ 조로 받은 10억원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한 규제 지속에 대해 KISDI최종보고서는 가능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내면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종보고서는 사전규제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제한돼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최근의 규제완화 및 중복규제 철폐 추세와 달라 논란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4월 6일자 15면에 『SKT, 국책연에 20억 제공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해 정부규제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4월 12일자 14면에 『“SK텔레텍 규제 계속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말 SK텔레콤으로부터 ‘성금’ 조로 받은 10억원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왔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KISDI는 위 연구를 진행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성금

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SK텔레콤과 체결한 연구용역은 해당 정책연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6일자 기사의 부제 중 『정통부 적발..... 수뢰 연구원 사표수리』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문건유출 연구원이나 그 누구도 SK텔레콤으로부터 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가 정보통신부에 보고되기에 앞서 SK텔레콤에 유출됐다는 내용과, 보고서의 초안이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경쟁제한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에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6일자 기사에 언급된 “KISDI가 지난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예산에 쪼들리자 이례적으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4월 6일자 15면 『“SKT, 국책연에 20억 제공 물의”』 및 4월 12일자 14면 『“SK텔레텍 규제 계속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한 정부규제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해당사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고 중간보고서에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 시장경쟁제한의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KISDI는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성금이 아니라 SK텔레콤과 체결한 연구용역비의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것이 SK텔레텍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에 영향을 끼친 바가 없으며, 또한 프로젝트 보고서에서도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시장경쟁제한 요인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수뢰한 연구원도 없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해당사자에게 성금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산업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2005년 4월 29일까지(단 토요일자는 제외) 게재하되, 제목(반론 보도문)의 활자크기는 본건 중재대상기사(SKT, 국책연에 20억 제공 물의)의 부제목(정보통신정책연서 SK텔레텍 프로젝트수행중 성금받아)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6일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부가 중국 쌀 협상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오다 추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부가 합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5서울중재11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홍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5. 4.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 개방』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13일자 3면)

내 용 : 지난해 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관련 국가들의 이의 제기없이 인증된 것은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중략)

이런 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부정적이지 않았다. 또 협상 당사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제 협상안을 당사국인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중국에 일부 농산물의 추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부가 합의를 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가합의 사항이 국내 과수농가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쌀 시판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제2의 마늘협상 파동’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파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3일 3면에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 개방』 제하의 기사에서 ‘쌀 비준 긍정 전망속 정부 거짓말 드러나’, ‘협상과정에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중국에 일부 농산물의 추가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부가합의를 해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에서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쌀협상 관련 “정부 거짓말”이란 보도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호 문안을 협의하여 200자 원고지 6매 내외의 분량으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오피니언 면의 ‘왜냐면’란에 2005. 4. 28.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 제하의 기사 (2005년 4월 27일자 21면)

내 용 :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정부의 쌀 협상 결과를 놓고, 중국 등 협상 상대국들에 추가적인 부가합의를 해줬다는 비판과 지적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치 <한겨레> 3면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개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같은 차원에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하고자 한다.

쌀 협상의 본질은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돼 있다. 이 때 상대국 요구사항이 쌀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부 상대국들은 다양한 양자 현안 해결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 기간 내내 농민단체, 언론 등에 상대국들이 검역 등 양자 현안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양자 협의 경로를 통해 이를 논의하자는 태도로 우리 쪽이 대응하고 있음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30일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의 검증기간에 협의를 계속하여 나라별로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임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면합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산 사과, 배 검역문제처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정부가 당시에는 왜 소상히 밝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협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로서는 농업인, 농민단체가 열망하여 왔

던 10년 추가 관세화 유예라는 쌀 협상 결과를 무역기구 검증과정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부가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정제된 문구로밖에 발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부가적 합의사항 중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사과·배에 대해 검역상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은 검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검역 전문가

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수입위험 평가 결과가 이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는 89년, 일본은 92년, 미국은 93년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 평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쌀이 우리 농업과 한국인의 정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당시 협상 상황과 부가적 합의사항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이 쌀 협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